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산림환경연구원 종합감사 —

2025. 12.



■ 처분요구일람표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지급 부적정(주의)	1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미흡(주의)	3
3.	용역 감독 및 검사 공무원 겸직 부적정 (주의)	5
4.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리 부적정 (주의)	7
5.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9
6.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11
7.	도유립(공유재산) 불법행위 사후관리 미이행 부적정(시정)	14
8.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생포인트 세입조치 소홀(시정)	18
9.	임도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20
10.	사방사업 시스템비계의 강관비계 변경 부적정(주의)	2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예규1446)」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에 따르면 상품권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에 해당 될 경우 상품권을 구매·사용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사용내역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경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 가능하고, 내부직원 단순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 하지 않아야 하며, 상품권을 구매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 단순 내부직원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상품권 구매내역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상품권을 구매 및 지급하였다.

[표] 0000년~0000년 정원가산업무진비 상품권 부적정 구매 지급 내역

(단위 : 원)

구분	상품권 종류	산출내역	구입금액	배부목적	홈페이지 공개 여부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미흡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등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갖추두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경상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확인서를 징구 받아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0건의 물품구입·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수의계약 시 확인서 미징구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계약일 (납품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 목

소 관 청

관 계 부 서

내 용

용역 감독 및 검사 공무원 겸직 부적정

산림환경연구원

*****, *****,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①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④제56조 제1항 제1호¹⁾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⑤제64조 제6항²⁾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5 -

제56조의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및 서부지원에서는 용역 완료 검사시 감독공무원이 아닌 검사 공무원을 별도 지정하여 용역 완료(준공)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시에는 3회 마다는 정식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등 0개 용역의 완료검사 시 별도의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감독공무원이 검사를 겸직하여 용역 완료(기성)검사를 실시·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용역 감독 및 검사 겸직 부적정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용역명	계약일자	완료 (기성) 검사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감독 공무원	검사 공무원	겸직 여부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같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산림사업 업무 등을 위한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배차신청)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공무 용도 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³⁾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유류의 정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 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7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운행 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상황, 유류

3)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불현황, 차량운행 내역, 차량일일점검표를 상세히 기록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운행한 날마다 작성 하여 결재(담당 전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0000. 00. 00.일 ~ 0000. 00. 00일 기간중 총00일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자료 제출 기간인 0000. 00. 00일 차량운행일지를 일괄 작성 결재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관용 차량일지 미작성 내역

부서명	차량번호	차종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기간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내 용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및 지원에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⁴⁾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며, ‘시설비’는 건물·기계·기구·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 여비,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1. 1. 1.][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따라서, 소모성 물품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 등 4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과 같이 0000년~0000년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부대비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공사 및 핵심부품 교체 공사 등을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총 00건 00,000,000원의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집행일	집행과목	지출내역	지출금액	적정과목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 (이하 “**”라 한다)에서는 산림소득
식물개발 연구를 위하여 「***** ** *****」을 아래 [표1]과 같이 시행
하였다.

[표1] ***** ** ***** ** ** 계약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계약명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방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2024.2.13.시행)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4.2.17.)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
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여성기업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 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여성 기업 확인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성기업법 시행령(시행 2023.3.7.)」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2호)」 제1조에 따르면 이 요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제2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의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법」 제20조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여성기업법에서 정한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표2]와 같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통한 여성기업 여부 확인 없이 계약상대방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센터에서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하여 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표2]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방법		예정 가격	예산절감 가능금액 ⁵⁾			비고
	적정	실제		계약금액	적정 계약금액	차액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② 아울러,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자]

① ***** ***** * * * [주 의]

② ***** ***** * * * [주 의]

5) 예정가격 1억 원 미만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최저낙찰률 적용, 물품·용역의 경우 88%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유림(공유재산) 불법행위 사후관리 미이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관할 구역내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0000. 0. 0일 불법벌채, 불법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표1] 도유림 불법행위 현황

위치	불법산림 훼손 면적(m ²)	불법벌채 피해 입목	고발일	인지경위	피고발자	피해발생경위	비고
진입도로 개설 산림훼손 사진대지				임목 무단 벌채 사진대지			

1. 도유림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미이행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산림청장 등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복구⁶⁾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불법산지전용으로 불법행위자가 특정⁷⁾되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경우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행위자에게 불법전용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군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복구에 대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복구비의 예치,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등

7) 불법벌채, 진입로(불법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자인서 : ***** (****.**,*)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군 **면 **리 산***-**번지 도유림 내 수액채취를 목적으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불법산지 전용된 000m²에 대하여 **군에서 불법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행정적 조치하도록 **군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보하지 않는 등 도유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도유림(공유재산) 불법 임목 벌채 피해 손해배상금 부과 미이행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 하며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산림청 「벌채·굴취 관련 민원 질의답변 및 판례 모음집」에 따르면 임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등 절취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적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도유림 내 임목에 대하여 불법으로 벌채 하여 공유재산의 손해를 가했으면, 임목 손해액을 산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불법 벌채된 입목 00주(교목)에 대하여 공유재산 피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0000. 00월 감사일 현재 까지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2] 도유림 불법벌채 입목 피해 현황

수종	피해본수 (본)	근원직경 (cm)	비고
			

※*****-***호(0000.0.0.) 수목훼손조사서 재구성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도유림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산지복구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군에 통보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임목(공유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시정)

③ 아울러,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자]

① ****

* * * * *

* * * [주 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생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소관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각 지원에서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 등 3개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0000년부터 0000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포인트 세입조치 하지 않아 00,000원 포인트가 소멸되었으며,
카드 포인트 000,000원에 대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포인트 소멸 내역 및 세입조치 미조치 내역 (0000~0000년 00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소멸포인트	포인트세입미조치 금액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포인트 0000,000원을 세입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도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 보호, 조림 및 재해예방, 산불방지 진화를 목적으로 임도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도설계·시공·관리 매뉴얼」 제1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임도사업의 업무처리와 현장관리에 필요한 표준적인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여, 행정 절차 지연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훈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뉴얼 제3편 제3호 가항 바목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의 관리를 통해 공사 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 제3편 제3호 가항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수급자, 감리자와 함께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매뉴얼 부록 6호 제3장 토공사편에서는 암깍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급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장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임도건설담당 부서에서는 임도건설사업 시공관리 및 사업을 준공할 경우 품질시험 및 검사실적을 확인하여야 했다.

또한, 암깍기 등의 작업 중 설계와 상이한 암반선이 노출될 경우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하는 등의 사업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임도건설담당 부서에서는 아래 [표]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암반선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출 암반의 암질과 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현지확인만을 통해 설계변경하는 등 사업관리를 미흡하게 추진하였다.

[표] 사업관리 부적정 임도사업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그 결과, 공설임도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른
수급자 클레임에 대한 대비 부족 및 사업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② 아울러,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자]

①	*****	*****	* * * [주 의]
②	*****	*****	* * * [주 의]
③	*****	*****	* * * [주 의]
④	*****	*****	* * * [주 의]
⑤	*****	*****	* * * [주 의]
⑥	*****	*****	* * * [주 의]
⑦	*****	*****	* * * [주 의]
⑧	*****	*****	* * * [주 의]
⑨	*****	*****	* * * [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방사업 시스템비계의 강관비계 변경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산사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림청 고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10. 나항에 따르면 이 고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기술교본」을 우선 적용하고 「사방기술교본」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토목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안 지침」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 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호)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 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일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 일시정지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관련 규정,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방댐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설계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거나, 부득이 강관비계로 변경할 경우 구조검토를 받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설계도서에 시스템 비계로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강관비계가 구조검토 없이 설치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 하는 등 공사현장의 고소 작업 안전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변경 내역

사업년도	공사명	비계 설계	시공	강관비계 구조검토 및 승인 여부	시공사	비고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